
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재결대상이 되는지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시 재결신청 가능한지

1 질의

가. 공익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 (사업기간 2001.7.30~2015.12.31.)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 (보상) 을 추진하지 못하던 중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된 후,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 (재결) 대상이 되는지?

나.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지급을 거부할 때 토지소유자 등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따른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지, 아니면 재결청을 상대로 손실보상 재결신청이 가능한지? 및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은?

2 회신
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토지보상법” 이라 함)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(이하 “사업인정고시” 라 한다) 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(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) 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2항 및 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, 이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한편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,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(이하 “관할 토지수용위원회” 라 한다)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실효로 손

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 (재결)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.

나.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,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(이하 “관할 토지수용위원회” 라 한다)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토지보상법령에서는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간에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, 행정심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 [2016.12.29. 토지정책과-10436]